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시에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101호, 2005. 10. 26. 공포, 2005. 10.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 제공>

●산업자원부령 제308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10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9조제4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등록되지 아니한”을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및 동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단서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115호

관

부

2005.10.28.(금요일)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창업 사업계획”을 각각 “사업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 및 투자경력 등) 1부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를 “귀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45일”을 “20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를 “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로 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

등록번호		장수							
조합명									
								변경	등록
								변경	등록
존속기간									
								변경	등록
								변경	등록
소재지									
								변경	등록
								변경	등록
출자총액									
금					원				
금			원					변경	등록
금			원					변경	등록
금			원					변경	등록
금			원					변경	등록
금			원					변경	등록
최초등록연월일									
								년	월
								일	등록
명칭·출자액란(장) 확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제16115호 관 공 2005.10.28.(금요일)

등록번호		출자총액		출자총액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칭					
	 변경 등록			
주소					
	 변경 등록			
조합출자금액					
금 원					
	 변경 등록			
금 원					
	 변경 등록			
금 원					
	 변경 등록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좌수 원인				
등록연월일					
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좌수 원인				
등록연월일					
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좌수 원인				
등록연월일					
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좌수 원인				
등록연월일					

조합원란(장)

확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대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시작일	년	월	일	담당 종료일	년	월 일
원인						
(1) 약력						
가.	(. . . ~ . . .)					
나.	(. . . ~ . . .)					
다.	(. . . ~ . . .)					
라.	(. . . ~ . . .)					
(2) 경력						
가.	(. . . ~ . . .)					
나.	(. . . ~ . . .)					
다.	(. . . ~ . . .)					
라.	(. . . ~ . . .)					
2. 일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시작일	년	월	일	담당 종료일	년	월 일
원인						
(1) 약력						
가.	(. . . ~ . . .)					
나.	(. . . ~ . . .)					
다.	(. . . ~ . . .)					
(2) 경력						
가.	(. . . ~ . . .)					
나.	(. . . ~ . . .)					
다.	(. . . ~ . . .)					
전문인력란(장)		확인				

전문인력란(장)

확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시에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100호, 2005. 10. 26. 공포, 2005. 10. 30. 시행)됨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식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 제공>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